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8.6.)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9.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 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식당·카페	▲ 종전과 같음	▲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 포함) ▲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 운영시간 제한 환원 →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결혼식장	▲ 종전과 동일 * 단, 식사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 종전과 동일 * 단, 식사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
준대규모점포·300㎡ 이상 종합소매업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권고)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의무화 조치 가능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권고)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의무화 조치 가능	준대규모점포는 매장 면적 300㎡ 이상인 경우만 적용
학술행사	▲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학술행사 '정의' 명시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 또는 2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최대 -18시 전 4명 -18시 후 2명 기간: 9.17.-9.23.
	▲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족 모임	▲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정	

	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내에서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가정 외 가족 모임은 위 사회적 모임을 제한(6명) 내에서 가능	
--	---------------------------------------------------------	----------------------------------------------------------------------------------------------------------	--

3.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 감염 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 금지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준)단계 사회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 기간 (9.17.~9.23.) 가족 모임)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 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펍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3단계)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 (4단계) 사적 모임 5명(18시~익일 05시 3명)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 (시험1~4단계)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3단계/4단계: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주무관	홍명기	행정사무관	안응식	생활방역팀장	심은혜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	이기일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	강도태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중 앙사고수습본 부 부분장	권덕철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1. 9. 3.)** 중양사고수습본부-28396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7층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5 팩스번호 044-202-0000 / mk7069@korea.kr / 비공개(5)